

의안번호	2112474
의 퇴 인	곽상도의원
회 답 일	2021.09.14.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“국내복귀”의 정의(안 제2조제3호)

-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(수도권¹⁾ 외의 지역에 한정)에 신설·증설하면 “국내복귀”의 정의에 포함
 - －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및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만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을 국내복귀로 봄

※ 개정안 제17조의2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와 관계 없음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비수도권에 신설·증설하는 경우를

1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도권”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.

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

제2조(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”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.

국내복귀에 포함하여 해당 기업을 현행 국내복귀기업과 같이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
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국내복귀기업에 지정되는 기업 수,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평균 지원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
- 추가재정소요 = $\sum_{t=2022}^{2026} \sum_i [\text{개정안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수}_{it} \times \text{지원액}_{it}]$
 - 이때 t 는 추계기간(2022~2026년), i 는 지원의 종류를 나타냄
-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은 [표 1]과 같이 기업의 신청·접수 → KOTRA의 검토·심사 →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사보고 → 선정확인서 발급 절차로 이루어짐

[표 1]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

단계	내용	주체
신청·접수	☐ 국내 기업 명의로 신청 ☐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모기업 - 국내모기업이 없는 경우,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국내법인(개인사업자 가능) 설립 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	신청기업 → KOTRA
↓		
검토·심사	☐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건 검토 및 1차 심사 ☐ 해외법인 실체조사 ☐ 심의위원 검토	KOTRA
↓		
심사보고	☐ 심사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	KOTRA → 산업통상자원부
↓		
선정여부결정, 선정확인서 발급	☐ 심사보고서 검토 ☐ 선정 여부 결정 및 통보	산업통상자원부 → 신청기업

자료: KOTRA, 「국내복귀지원제도.zip - 유턴기업 Summary Guide」, 2021.6.

-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[표 2]와 같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단계에서 구조조정컨설팅, 이전운송비 및 관세 감면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, 국내사업장 투자시에도 토지매입비용, 기계구입비용 등 보조금 지급 및 고용창출장려금 등이 지원됨²⁾

-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[참고자료] 참조

[표 2]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

기업 유형	복귀 지역	보조금		이전	조세		고용 창출 장려금	인력		구조 조정 컨설팅	스마트 공장	입지 지원	금융 지원	보증· 보험 우대	R&D			
		투자			법인 소득세	관세		외국인 고용										
		입지	설비						E-7							E-9		
중소 중견 기업	비수도권	○	○	○	○		○	모두 지원	○	○	○	○	○	모두 지원				
	수도권 (과밀이외)				○							X				○		
	수도권 (과밀이내)	X	△	△	X							X						
대 기 업	비수도권	X	○	○	○		X	모두 지원	X	X	X	○	X			모두 지원		
	수도권 (과밀이외)				○							X						X
	수도권 (과밀이내)	X	△	△	X							X						

자료: KOTRA, 「국내복귀지원제도.zip - 유턴기업 Summary Guide」, 2021.6.

- 그러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기업의 범위, 동 기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래의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사업장이 KOTRA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, 현 단계에서 국내복귀기업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2) KOTRA, 「국내복귀지원제도.zip -유턴기업 Summary Guide」, 2021.6.

[참고자료]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

(자료: KOTRA, 「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.zip - 유턴기업 Summary Guide」를 재정리)

구분		기업규모	지원내용	
보조금	투자보조금	제한없음	- 기업당 국비기준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(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) * 투자보조금+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* 수도권은 기업당 300억원 이내(사업장당 150억원 이내) * 보조금 금액은 국비 기준	
	이전보조금		- 기업당 4억원 이내 이전보조금 지급	
조세감면		제한없음	세액감면비율	- 법인세 5년간 100% + 2년간 50% 감면 * 수도권(과밀억제권역 이외)으로 복귀하는 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·유지기업의 경우, 3년간 100% + 2년간 50% 감면 적용
			관세감면	- 신규·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100% 감면 * 해외사업장 축소·유지 기업: 50% 감면 적용
		감면기간특례	- 투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+2년간 감면	
인력	고용창출장려금	대기업 제외	- 100명 한도로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를 2년간 지급	
	외국인고용(E-7 VISA)	제한없음	- 해외사업장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외국인 생산관리자 특정활동사증(E-7 VISA) 발급	
	외국인고용허가제(E-9 VISA)	중소기업	외국인고용인원(E-9) 쿼터 확대	- 허용 한도를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확대
구조조정 컨설팅		중소·중견기업	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	- 해외 현지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-9 선발제도에서 가점을 부여하며,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
			- 컨설팅 비용의 30~70% 지원(USD 20,000 한도)	
스마트공장		중소·중견기업	로봇활용제조 혁신지원사업	- 사업비 50%, 5억원 한도
			스마트 공장	- 정부지원금 유턴기업 우대(사업비의 75% 한도)
입지지원		제한없음	국·공유재산 사용 특례	- 국·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임대 가능 -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 산정 특례 및 감면 - 국·공유지 매입 시 매입대금 지불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
			산업단지 우선 입주	- 국가·일반·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-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
금융지원		제한없음	시설투자금	- 80~90% 대출 지원 - 대출단기 최대 15년
			운영자금	- 저리대출, 수출입금액의 80~100% - 산업구조고도화지원프로그램 - 설비투자 붙임 프로그램 - 수은 유턴기업 특별프로그램
보증·보험지원		제한없음	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	-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·시설자금
			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	- (보증비율) 90% - (보증료) 0.2%p 우대 - (보증비율) 90~95% - (보증료율) 0.3~0.5%p 감면
R&D지원		제한없음	무역(수출) 보험·보증지원	- 보험(보증)료 할인: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(보증)료 20% 이내 할인 및 수출신용보증(매입) 0.1%p 차감할인 - 수출신용보증 및 수입보험 책정가능 한도 1.5배 우대
			-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R&D(기술개발)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	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	장 이현경
추계세제분석관	김계남
연 락 처	02-6788-4650
	godself@nabo.go.kr
